

부천시도시계획제4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7년 11월 15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7년 11월 1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40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년 12월 12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가. 제안이유

- 우리 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관련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동 조례 폐지”

3.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도시계획제4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제187호
의결 년월일	2007. 12. 21 (제140회)

제출년월일 : 2007. 11. 14.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제안이유

- 우리 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관련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동 조례 폐지”

첨부 : 부천시도시계획제4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부천시도시계획제4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부천시도시계획제4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조례]

부천시도시계획제4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제정 1974. 02. 01 조례 제114호

개정 1980. 07. 15 조례 제313호

제1조(목적)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부천시도시계획제4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지구) 이 사업지구는 서기 1972년 1월 22일 건설부고시 제2호에 의한 부천시 도시계획제4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 이 사업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교환, 분합, 구획의 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 공공 시설의 설치변경 및 택지조성사업을 행한다.

제4조(사업내용) ①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체비지의 매각대금 보조금 기타 잡수입으로 충당하고 부족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금으로 충당한다.

②전항의 수익자 부담금에 관하여는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5조(기본면적) 환지교부의 기준이 될 종전 토지의 면적은 고시일 현재의 토지 대장 및 임야대장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따로 면적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면적에 의한다.

1. 고시일이후에 신규등록 또는 분합한 토지와 지적은 그 등록 또는 분합할 토지의 지적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측 기타 방법에 의하여 면적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면적

제6조(토지의 가격평정) 정리전 및 정리후의 토지가격 평정은 위치, 형상, 고저, 건설, 지가, 교통 및 환경등을 참작하여 시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7조(환지예정지의 지정) ①시장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함과 동시에 관계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였을 때 또한 같다.

제8조(환지예정지의 측량등) ①환지 예정지의 권리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후에 환지 예정지에 대한 각종 측량과 측량도 교부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부천시수수료조례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전항의 수수료는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③전 제1항의 측량은 측량사 자격소지자가 하여야 한다.

제9조(측량대행) ①시장은 측량사 자격소지자가 없거나 기타 사무 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무의 자격이 있는 자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자의 사무 및 책임한계 대행수수료 보증금 기타 대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환지계획) ①환지는 제13조제3항의 권리 면적기준으로 종전의 위치 또는 이에 가까운 위치에서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정리후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공하는 토지나 체비지에 있어서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교부할 수 있다.

③정리 후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공하는 토지에 대한 환지는 감보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1조(환지의 과부족과 금전청산) ①정리전의 토지면적 또는 평정 가격이 근소하여 일택지로서의

기준면적에 미달되는 환지는 과도환지를 교부하거나 또는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제12조(환지처분) 지구내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도 사업종결에 편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지처분을 할 수 있다.

제13조(청산금) ① 환지처분에 의하여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액은 권리 금액과 환지의 평정가격과의 차액으로 한다.

② 전항의 권리 금액이라 함은 권리면적에 종전위치에서의 정리 후 토지 평정 가격의 단가를 승한 액으로 한다.

③ 전항의 권리면적이라 함은 표준면적에서 부담면적을 공제한 면적을 말한다.

제14조(부담면적) 공공용지에 대한 토지 각필의 부담면적은 별도로 정한 일정 부담율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5조(분할연납) ① 법 제6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청산금을 분할징수 교부할 때에는 년 1할의 금액을 이자로 징수 또는 교부한다.

② 전항의 징수 기간은 확정일로부터 1년내로 하고 이후부터는 1할 가산과 동시 지방세법 제28조에 의거 강제등기 압류할 수 있다.

제16조(체비지매각) 체비지 매각에 관하여는 그 토지의 위치, 면적, 가격처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장이 이를 공고한다.

제17조(회계년도) 사업의 회계년도는 부천시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8조(통지) 시장은 토지구획정리를 필하였을 때에는 환지설명서의 초본을 첨부하여 관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한다.

제19조(대리인신고) ①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로서 시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는 청산금의 납부수령 또는 서류의 송달 기타 본 사업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시내 거주자로서 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토지 소유자는 전항의 대리인을 지정하였을 때 또는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성명 주소 또는 거소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20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